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4. 1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36호로 2021년 4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환경을 진단하고 모든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고령친화도시 연도별 계획 및 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다.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9조)

라. 국제기구 가입, 교육 및 홍보, 예산 지원, 준용,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협의사항

- 1) 위원회 운영사항 검토 결과: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2) 예산수반사항 검토 결과: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5)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다. 입법예고(2021. 3. 4. ~ 3. 24./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건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환경을 진단하고 모든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임.

○ 주요 내용으로

-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고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연도별 계획 수립·시행과 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국제기구 가입, 교육 및 홍보, 예산 지원,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우리나라는 2017년에 이미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경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우리구도 2021년 3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59,899명으로 전체 인구 377,590명 중 약 16%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고령친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입법의 필요성이 있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었으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4. 1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37호로 2021년 4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매년 10월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효행장려금의 지급시기를 부양대상자의 생일달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효행장려금의 지급시기 변경(안 제7조제5항)
- 나. 조문 체계 간결화 및 의미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
- 다.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의거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2021. 3. 11. ~ 3. 31./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건은 매년 10월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효행장려금의 지급시기를 부양대상자의 생일달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7조제5항에서는 효행장려금의 지급시기를 기존의 매년 10월 일괄 지급방식에서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의 생일달에 지급하는 개별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올해 생일이 지난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세대에는 조례 시행 다음 달에 지원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음.
 -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지침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음.

- 효행장려금의 지급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10월 일괄 지급보다 생일달의 개별 지급이 보다 합리적이라 사료되며,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참고 자료

1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